

주요 노동동향

생산 및 물가 동향

- ◆ 2015년 8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.3% 증가(전월대비 0.5% 증가)
  -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(16.6%), 석유정제(6.6%) 등에서 증가하였고, 전자부품(-6.0%), 금속가공(-32.2%) 등에서는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0.2% 증가함(전월대비 0.4% 증가).
  -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·음식점(-2.5%), 전문·과학·기술(-0.8%)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·보험(7.6%), 부동산·임대(9.5%) 등에서는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.1% 증가함(전월대비 0.4% 증가).
  
- ◆ 2015년 8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1.8% 증가,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7.1% 증가
  -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, 신발·가방 등 준내구재(4.8%) 등에서 판매가 감소하였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(9.4%) 등에서는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.8% 증가함(전월대비 1.9% 증가).
  -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,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7.1% 증가함(전월대비 0.4% 감소).
  - 건설기성(불변)은 건축공사 실적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4.5% 증가하였고, 건설수주(경상)는 주택, 사무실·점포 등에서 수주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3.7% 감소함.
  
- ◆ 2015년 8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.8% 상승,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.8% 상승

-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.3p 상승함.
-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.1p 상승함.
- ◆ 2015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.7% 상승(생활물가지수 0.1% 감소)
- 2015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.04(2010년=100)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0.6% 상승함(전월대비 0.2% 하락).
  -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, 전년동월대비 주류·담배(50.3%), 음식·숙박(2.5%), 교육(1.8%), 식료품·비주류음료(1.0%) 등에서 상승한 반면, 교통(-7.0)과 주택·수도·전기·연료(-1.2%) 등에서는 하락함.
  - 2015년 8월 생활물가지수는 107.81을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.2% 하락함(전월대비 0.1% 하락).

〈표 1〉 최근 경제일반 동향

(단위 : %, 전년동분기대비, 전년대비, 전년동월대비, 전월대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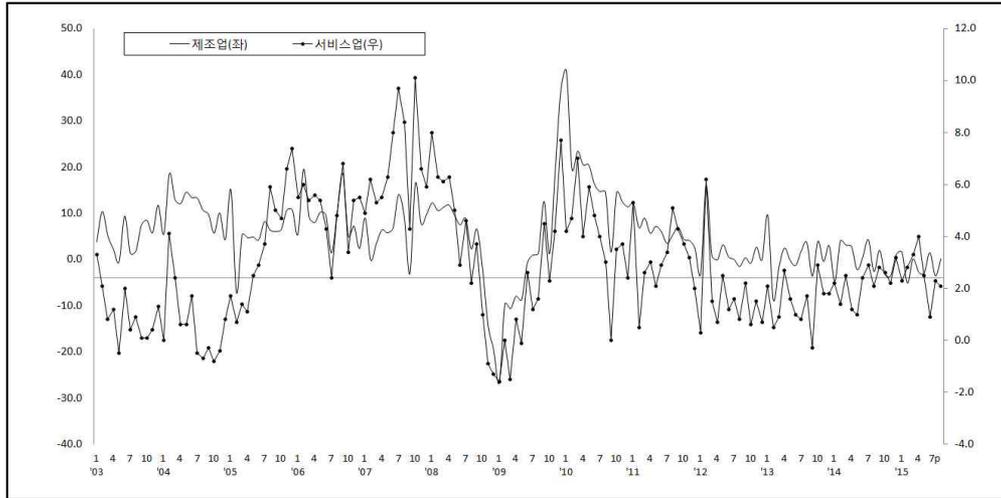
|    |         | 2012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2013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2014  |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2015 |      |      |            |
|----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|
|    |         | 1/4  | 2/4  | 3/4  | 4/4  | 연간   | 1/4  | 2/4  | 3/4  | 4/4  | 연간   | 1/4   | 2/4   | 3/4  | 4/4p | 연간   | 8월   | 1/4  | 2/4p | 8월p        |
| 생산 | 광공업 생산  | 10.4 | 7.2  | 5.3  | 5.0  | 6.9  | 3.8  | 1.5  | 0.4  | 1.1  | 1.7  | -1.7  | -0.7  | 0.0  | -2.0 | 0.0  | -2.6 | -0.9 | -1.5 | 0.3(0.4)   |
|    | 제조업 생산  | 10.6 | 7.4  | 5.1  | 5.3  | 7.0  | 4.2  | 1.5  | 0.3  | 1.2  | 1.8  | -1.8  | -0.8  | 0.0  | -2.2 | -0.1 | -2.6 | -1.0 | -1.5 | 0.2(0.4)   |
|    | 출하      | 11.9 | 7.2  | 4.9  | 3.5  | 6.7  | 3.3  | 1.5  | 0.4  | -0.1 | 1.3  | -2.3  | -1.0  | -0.2 | -1.3 | -0.2 | -2.8 | -0.7 | -1.3 | 0.4(0.3)   |
|    | 내수      | 6.8  | 3.8  | 2.7  | 0.2  | 3.3  | 0.3  | -1.3 | -1.5 | -1.9 | -1.1 | -2.8  | -1.2  | -0.4 | -2.6 | 0.2  | -4.2 | -0.7 | -0.2 | 0.8(-0.9)  |
|    | 수출      | 18.1 | 11.6 | 7.7  | 7.2  | 10.8 | 6.7  | 4.9  | 2.3  | 1.8  | 3.9  | -1.7  | -0.6  | 0.1  | 0.3  | -0.6 | -1.2 | -0.6 | -2.5 | -0.1(1.6)  |
|    | 서비스업 생산 | 2.8  | 3.3  | 4.5  | 2.7  | 3.3  | 2.5  | 1.7  | 1.6  | 1.3  | 1.7  | 0.8   | 1.7   | 0.7  | 2.7  | 2.2  | 2.1  | 2.8  | 2.4  | 2.1(0.4)   |
| 소비 | 소비재 판매  | 5.4  | 5.7  | 4.7  | 1.9  | 4.3  | 2.0  | 1.0  | 1.7  | 2.5  | 1.8  | 0.2   | 1.1   | 0.7  | 1.9  | 1.6  | 2.5  | 1.6  | 3.0  | 1.8(1.9)   |
| 투자 | 설비투자    | 5.4  | 4.8  | -3.1 | -4.7 | 0.7  | 9.4  | -0.4 | -7.1 | -5.6 | -1.1 | -15.4 | -10.0 | -4.7 | 5.1  | 4.6  | -9.8 | 8.4  | 5.1  | 17.1(-0.4) |
| 물가 |         | 3.0  | 2.4  | 1.6  | 1.7  | 2.2  | 1.6  | 1.2  | 1.4  | 1.1  | 1.3  | 1.1   | 1.6   | 1.4  | 1.0  | 1.3  | 1.1  | 0.6  | 0.5  | 0.6(-0.2)  |

주: 1) 광공업 생산은 광업(C), 제조업(D), 전기·가스업(E, F)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.  
 2)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제9차 개정, 2007. 12. 28)상의 13개 대분류(도소매업(G), 운수업(H), 숙박 및 음식점업(I), 출판·영상·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(J), 금융·보험업(K), 부동산 및 임대업(L)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M),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(N), 공공행정·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(O), 교육서비스업(P)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Q), 예술·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R)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(S), 하수·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(E))를 포괄하며, 이 중 하수·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(E)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.  
 3) 물가상승률은 2015년 9월 기준임.  
 4) p는 잠정치임.

자료: 통계청, 『산업활동동향』, 『소비자물가동향』, 각호.

[그림 1]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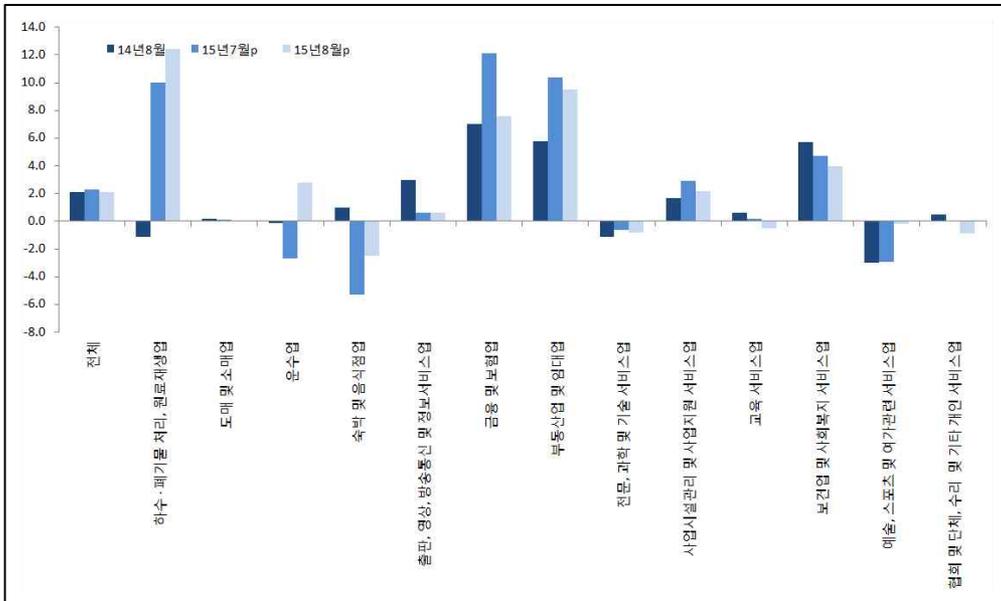
(단위 : %, 전년동월대비)



주: P는 잠정치임.  
 자료: 통계청(2015. 10.), 『2015년 8월 산업활동동향』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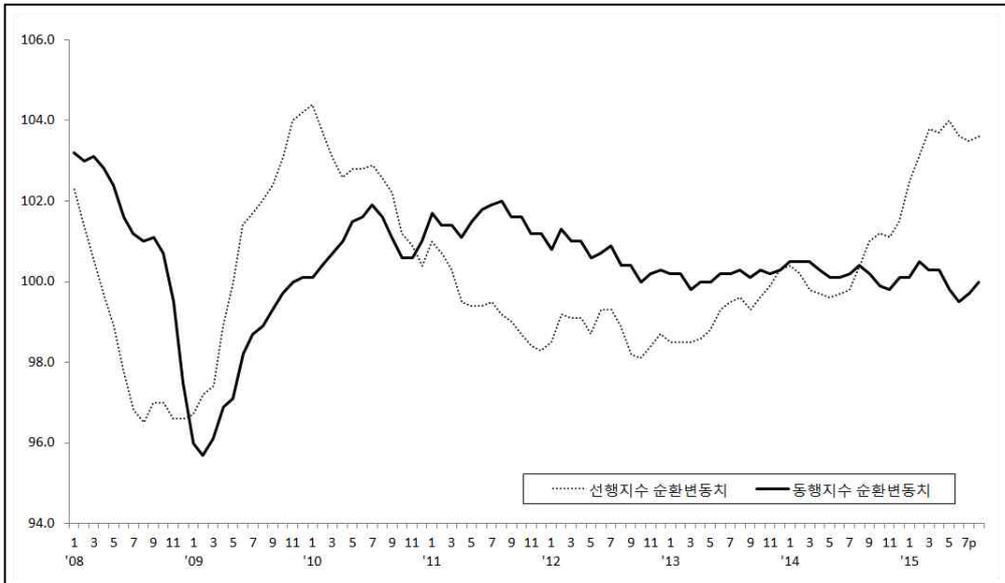
[그림 2]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

(단위 : %, 전년동월대비)



주: p는 잠정치임.  
 자료: 통계청, KOSIS.

[그림 3]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·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(2010=100)



주 : p는 잠정치임.  
 자료 : 통계청, KOSIS.

(정현상, 동향분석팀 연구원)

## 고용 동향

### ◆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전년동분기와 같은 수준

- 2015년 3/4분기 중 경제활동인구는 27,166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56천 명(1.3%) 증가함.
  -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,650천 명으로 142천 명(0.9%) 증가하였고, 여성은 11,516천 명으로 214천 명(1.9%) 증가하였음.
- 2015년 3/4분기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3.0%로 전년동분기와 동일함.
  - 성별로 보면, 남성(74.2%)은 전년동분기대비 0.3%p 하락, 여성(52.4%)은 전년동분기대비 0.4%p 상승하였음(그림 4 윗그림 참조).

〈표 2〉 최근의 고용 동향

(단위: 천 명, %, 전년동분기대비, 전년동월대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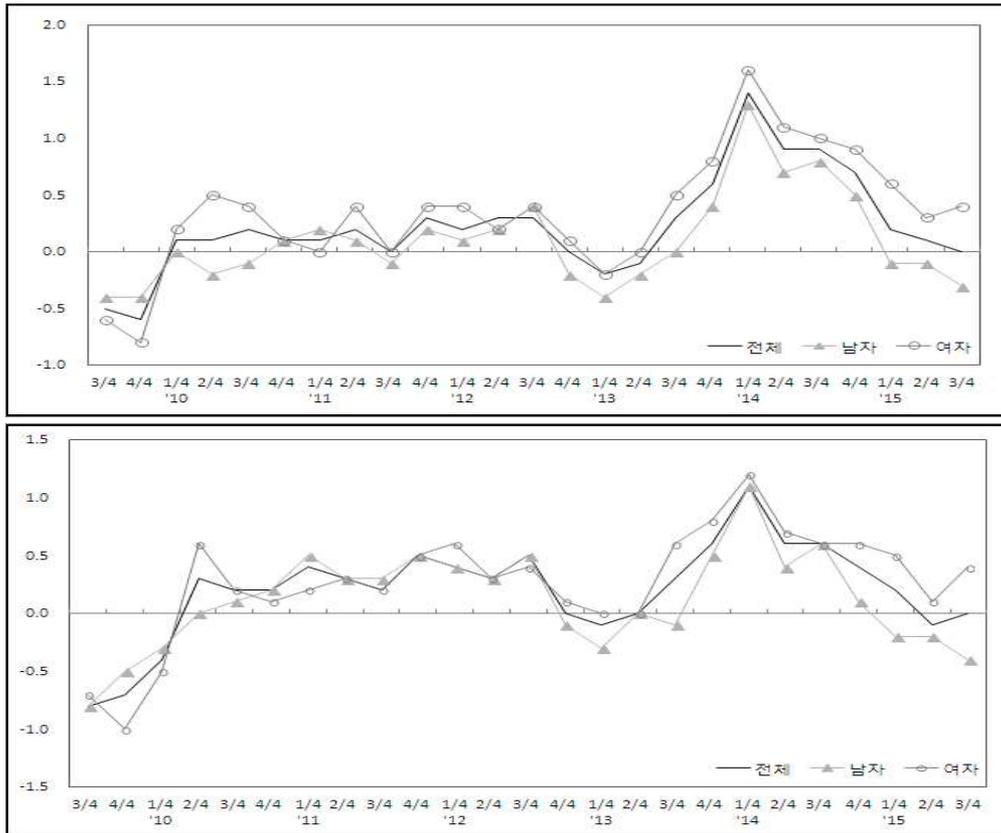
|         | 2014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2015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| 1/4분기            | 2/4분기             | 3/4분기            | 9월               | 4/4분기            | 1/4분기            | 2/4분기            | 3/4분기            | 8월               | 9월               |
| 경제활동인구  | 25,945<br>( 3.4) | 26,767<br>( 2.4)  | 26,810<br>( 2.4) | 26,766<br>( 2.2) | 26,622<br>( 2.1) | 26,356<br>( 1.6) | 27,140<br>( 1.4) | 27,166<br>( 1.3) | 27,064<br>( 1.1) | 27,129<br>( 1.4) |
| 참가율     | 61.3             | 63.1              | 63.0             | 62.8             | 62.4             | 61.5             | 63.2             | 63.0             | 62.8             | 62.9             |
| 취업자     | 24,913<br>( 3.0) | 25,790<br>( 1.8)  | 25,927<br>( 2.0) | 25,917<br>( 1.8) | 25,767<br>( 1.7) | 25,267<br>( 1.4) | 26,098<br>( 1.2) | 26,237<br>( 1.2) | 26,141<br>( 1.0) | 26,264<br>( 1.3) |
| 고용률     | 58.8             | 60.8              | 60.9             | 60.8             | 60.4             | 59.0             | 60.7             | 60.9             | 60.7             | 60.9             |
| 실업자     | 1,031            | 977               | 884              | 849              | 854              | 1,089            | 1,042            | 929              | 923              | 866              |
| 실업률     | 4.0              | 3.7               | 3.3              | 3.2              | 3.2              | 4.1              | 3.8              | 3.4              | 3.4              | 3.2              |
| 비경제활동인구 | 16,397<br>(-2.6) | 15,685<br>( -1.4) | 15,760<br>(-1.4) | 15,845<br>(-1.0) | 16,066<br>(-0.6) | 16,469<br>( 0.4) | 15,835<br>( 1.0) | 15,921<br>( 1.0) | 16,022<br>( 1.4) | 15,990<br>( 0.9) |

주: ( ) 안의 수치는 전년동분기대비, 전년동월대비 증가율. 고용률 = 취업자 / 생산가능인구×100  
 자료: 통계청(2015. 10.), 『2015년 9월 고용동향』.

- 2015년 3/4분기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,921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61천 명(1.0%) 증가함.
  - －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,449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32천 명(2.5%) 증가하였고,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,473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1천 명(0.3%) 증가하였음.
  - －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505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8천 명 증가하였음.
  - －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‘쉬었음’은 1,543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22천 명(8.6%) 증가하였고, 정규교육기관 재학, 입시학원, 취업을 위한 학원·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‘재학·수강’은 4,098천 명으로 112천 명(-2.7%) 감소하였음.
- 2015년 3/4분기 중 고용률은 60.9%로 전년동분기대비 변동없음.
  - － 남성의 고용률은 71.5%로 전년동월대비 0.4%p 하락, 여성의 고용률은 50.7%로 전년동월대비 0.4%p 상승하였음(그림 4 아랫그림 참조).
- 2015년 3/4분기 중 취업자는 26,237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10천 명(1.2%) 증가함.
  - － 성별로 보면, 남성 취업자는 15,089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10천 명(0.7%) 증가하였고, 여성 취업자는 11,147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99천 명(1.8%) 증가하였음(그림 5 참조).

[그림 4] 성별 경제활동참가율(위)과 고용률(아래) 증감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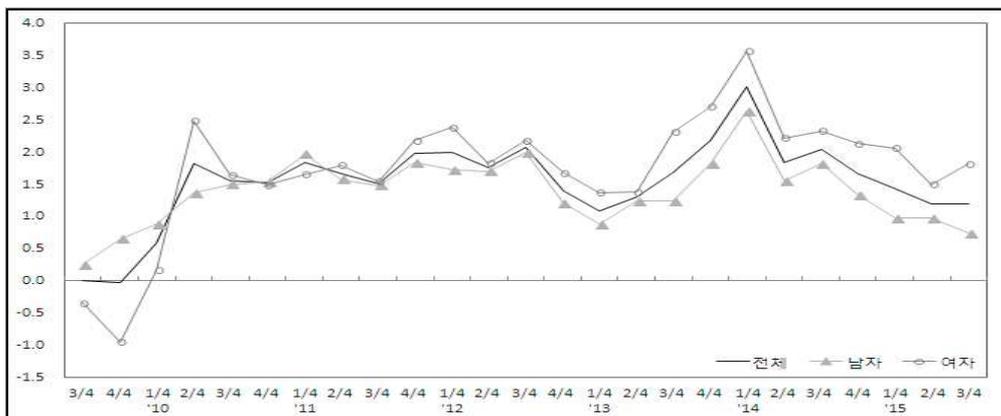
(단위: %p, 전년동분기대비)



자료: 통계청, KOSIS.

[그림 5] 성별 취업자 증가율 증감 추이

(단위: %, 전년동분기대비)



자료: 통계청, KOSIS.

- 2015년 3/4분기 중 실업자는 929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5천 명(5.1%) 증가, 실업률은 3.4%로 전년동분기대비 0.1%p 상승함.
  - 남성 실업자는 561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2천 명(6.0%) 증가하였고, 여성 실업자는 369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5천 명(4.1%) 증가하였음.
  - 실업률은 남성이 3.6%로 전년동분기대비 0.2%p 상승하였고, 여성은 3.2%로 전년동분기대비 0.1%p 상승하였음.

◆ 30대 제외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 증가

- 2015년 3/4분기 중 연령별 취업자는 15~29세(50천 명, 1.3%), 40~49세(1천 명, 0.0%), 50~59세(145천 명, 2.5%), 60세 이상(174천 명, 4.7%)에서 증가, 30~39세(-60천 명, -1.0%)에서 감소함.
  - 교육수준별 취업자는 전년동분기대비 고졸(93천 명, 0.9%), 대졸 이상(369천 명, 3.3%)에서 증가하였고, 중졸이하(-153천 명, -3.3%)에서 감소하였음.

〈표 3〉 연령별·교육수준별 취업자

(단위: 천 명, %, 전년동분기대비, 전년동월대비)

|        | 2014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2015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       | 1/4분기            | 2/4분기            | 3/4분기            | 9월               | 4/4분기            | 1/4분기            | 2/4분기            | 3/4분기            | 8월               | 9월               |
| 전 체    | 24,913<br>( 3.0) | 25,790<br>( 1.8) | 25,927<br>( 2.0) | 25,917<br>( 1.8) | 25,767<br>( 1.7) | 25,267<br>( 1.4) | 26,098<br>( 1.2) | 26,237<br>( 1.2) | 26,141<br>( 1.0) | 26,264<br>( 1.3) |
| 15~29세 | 3,840<br>( 2.6)  | 3,843<br>( 1.4)  | 3,941<br>( 2.7)  | 3,865<br>( 1.4)  | 3,855<br>( 1.5)  | 3,872<br>( 0.8)  | 3,933<br>( 2.3)  | 3,991<br>( 1.3)  | 3,990<br>( 0.9)  | 3,956<br>( 2.4)  |
| 30~39세 | 5,672<br>(-0.1)  | 5,721<br>(-0.7)  | 5,741<br>(-0.1)  | 5,738<br>(-0.6)  | 5,722<br>(-0.5)  | 5,671<br>( 0.0)  | 5,665<br>(-1.0)  | 5,681<br>(-1.0)  | 5,674<br>(-1.0)  | 5,671<br>(-1.2)  |
| 40~49세 | 6,645<br>( 1.5)  | 6,704<br>( 0.5)  | 6,678<br>( 0.2)  | 6,690<br>( 0.4)  | 6,700<br>( 0.1)  | 6,598<br>(-0.7)  | 6,690<br>(-0.2)  | 6,679<br>( 0.0)  | 6,651<br>(-0.3)  | 6,707<br>( 0.3)  |
| 50~59세 | 5,684<br>( 6.0)  | 5,878<br>( 4.0)  | 5,891<br>( 3.8)  | 5,915<br>( 3.6)  | 5,926<br>( 3.3)  | 5,861<br>( 3.1)  | 6,016<br>( 2.3)  | 6,036<br>( 2.5)  | 6,001<br>( 2.1)  | 6,049<br>( 2.3)  |
| 60세 이상 | 3,072<br>( 7.6)  | 3,643<br>( 5.5)  | 3,676<br>( 5.5)  | 3,709<br>( 5.6)  | 3,565<br>( 6.0)  | 3,265<br>( 6.3)  | 3,793<br>( 4.1)  | 3,850<br>( 4.7)  | 3,826<br>( 4.9)  | 3,882<br>( 4.7)  |
| 중졸 이하  | 4,210<br>(-3.1)  | 4,664<br>(-4.8)  | 4,614<br>(-4.0)  | 4,627<br>(-4.3)  | 4,472<br>(-3.5)  | 4,070<br>(-3.3)  | 4,495<br>(-3.6)  | 4,461<br>(-3.3)  | 4,421<br>(-3.7)  | 4,467<br>(-3.5)  |
| 고졸     | 9,908<br>( 2.6)  | 10,060<br>( 2.1) | 10,224<br>( 3.3) | 10,174<br>( 2.8) | 10,229<br>( 3.0) | 10,117<br>( 2.1) | 10,244<br>( 1.8) | 10,317<br>( 0.9) | 10,294<br>( 0.8) | 10,291<br>( 1.1) |
| 대졸 이상  | 10,795<br>( 6.0) | 11,067<br>( 4.7) | 11,089<br>( 3.6) | 11,115<br>( 3.5) | 11,067<br>( 2.7) | 11,080<br>( 2.6) | 11,360<br>( 2.6) | 11,458<br>( 3.3) | 11,426<br>( 3.1) | 11,506<br>( 3.5) |

주: ( ) 안의 수치는 전년동분기대비, 전년동월대비 증가율.  
 자료: 통계청(2015. 10.), 『2015년 9월 고용동향』.

◆ 상용직 임금근로자 증가 지속

○ 2015년 3/4분기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는 19,401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521천 명(2.8%) 증가, 비임금근로자는 6,836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11천 명(-3.0%) 감소함.

-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2,686천 명으로 505천 명(4.1%), 일용근로자는 1,560천 명으로 14천 명(0.9%) 증가하였고, 임시근로자는 5,155천 명으로 2천 명 가량 증가하여 변동 폭이 미미하였음.
-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(고용주 포함)는 5,623천 명으로 137천 명(-2.4%), 무급가족종사자는 1,212천 명으로 75천 명(-5.8%) 감소하였음.

〈표 4〉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동향

(단위 : 천 명, %, 전년동분기대비, 전년동월대비)

|              | 2014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2015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| 1/4분기             | 2/4분기             | 3/4분기            | 9월               | 4/4분기            | 1/4분기            | 2/4분기            | 3/4분기            | 8월                | 9월               |
| 전 체          | 24,913<br>( 3.0)  | 25,790<br>( 1.8)  | 25,927<br>( 2.0) | 25,917<br>( 1.8) | 25,767<br>( 1.7) | 25,267<br>( 1.4) | 26,098<br>( 1.2) | 26,237<br>( 1.2) | 26,141<br>( 1.0)  | 26,264<br>( 1.3) |
| 비임금근로자       | 6,597<br>( 0.3)   | 6,984<br>( -0.3)  | 7,047<br>( 0.0)  | 6,999<br>( -0.5) | 6,799<br>( -0.8) | 6,509<br>( -1.3) | 6,871<br>( -1.6) | 6,836<br>( -3.0) | 6,829<br>( -3.9)  | 6,796<br>( -2.9) |
| 자영업자         | 5,512<br>( -0.1)  | 5,712<br>( -0.2)  | 5,760<br>( 0.3)  | 5,742<br>( 0.3)  | 5,625<br>( 0.1)  | 5,463<br>( -0.9) | 5,675<br>( -0.6) | 5,623<br>( -2.4) | 5,621<br>( -3.1)  | 5,593<br>( -2.6) |
|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| 1,507<br>( 0.0)   | 1,553<br>( 1.4)   | 1,567<br>( 3.7)  | 1,554<br>( 3.1)  | 1,574<br>( 5.5)  | 1,570<br>( 4.2)  | 1,619<br>( 4.2)  | 1,587<br>( 1.3)  | 1,595<br>( 0.8)   | 1,578<br>( 1.5)  |
|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| 4,005<br>( -0.2)  | 4,159<br>( -0.9)  | 4,192<br>( -0.9) | 4,188<br>( -0.7) | 4,051<br>( -1.8) | 3,893<br>( -2.8) | 4,056<br>( -2.5) | 4,037<br>( -3.7) | 4,026<br>( -4.6)  | 4,015<br>( -4.1) |
| 무급가족종사자      | 1,085<br>( 2.5)   | 1,272<br>( -0.6)  | 1,287<br>( -1.7) | 1,257<br>( -4.2) | 1,175<br>( -4.9) | 1,046<br>( -3.6) | 1,195<br>( -6.1) | 1,212<br>( -5.8) | 1,208<br>( -7.4)  | 1,203<br>( -4.3) |
| 임금근로자        | 18,316<br>( 4.0)  | 18,806<br>( 2.6)  | 18,880<br>( 2.8) | 18,918<br>( 2.7) | 18,968<br>( 2.6) | 18,758<br>( 2.4) | 19,227<br>( 2.2) | 19,401<br>( 2.8) | 19,312<br>( 2.9)  | 19,468<br>( 2.9) |
| 상용근로자        | 11,985<br>( 5.3)  | 12,175<br>( 4.1)  | 12,181<br>( 2.8) | 12,213<br>( 2.7) | 12,280<br>( 3.0) | 12,341<br>( 3.0) | 12,507<br>( 2.7) | 12,686<br>( 4.1) | 12,675<br>( 4.2)  | 12,757<br>( 4.5) |
| 임시근로자        | 4,835<br>( 1.5)   | 5,063<br>( 2.4)   | 5,153<br>( 4.6)  | 5,138<br>( 4.1)  | 5,076<br>( 2.9)  | 4,918<br>( 1.7)  | 5,066<br>( 0.1)  | 5,155<br>( 0.0)  | 5,106<br>( 0.0)   | 5,170<br>( 0.6)  |
| 일용근로자        | 1,496<br>( 2.1)   | 1,567<br>( -6.6)  | 1,546<br>( -2.5) | 1,568<br>( -2.3) | 1,612<br>( -1.2) | 1,500<br>( 0.3)  | 1,654<br>( 5.5)  | 1,560<br>( 0.9)  | 1,531<br>( 1.6)   | 1,541<br>( -1.7) |
| 36시간 미만      | 3,593<br>( -35.4) | 3,397<br>( -29.5) | 5,229<br>( 2.9)  | 3,528<br>( 2.4)  | 3,659<br>( 7.8)  | 3,689<br>( 2.7)  | 3,661<br>( 7.8)  | 4,848<br>( -7.3) | 7,129<br>( -16.9) | 3,663<br>( 3.8)  |
| 36시간 이상      | 20,829<br>( 15.1) | 22,090<br>( 9.3)  | 20,184<br>( 1.9) | 22,049<br>( 1.7) | 21,779<br>( 0.7) | 21,091<br>( 1.3) | 22,120<br>( 0.1) | 20,895<br>( 3.5) | 18,205<br>( 10.8) | 22,295<br>( 1.1)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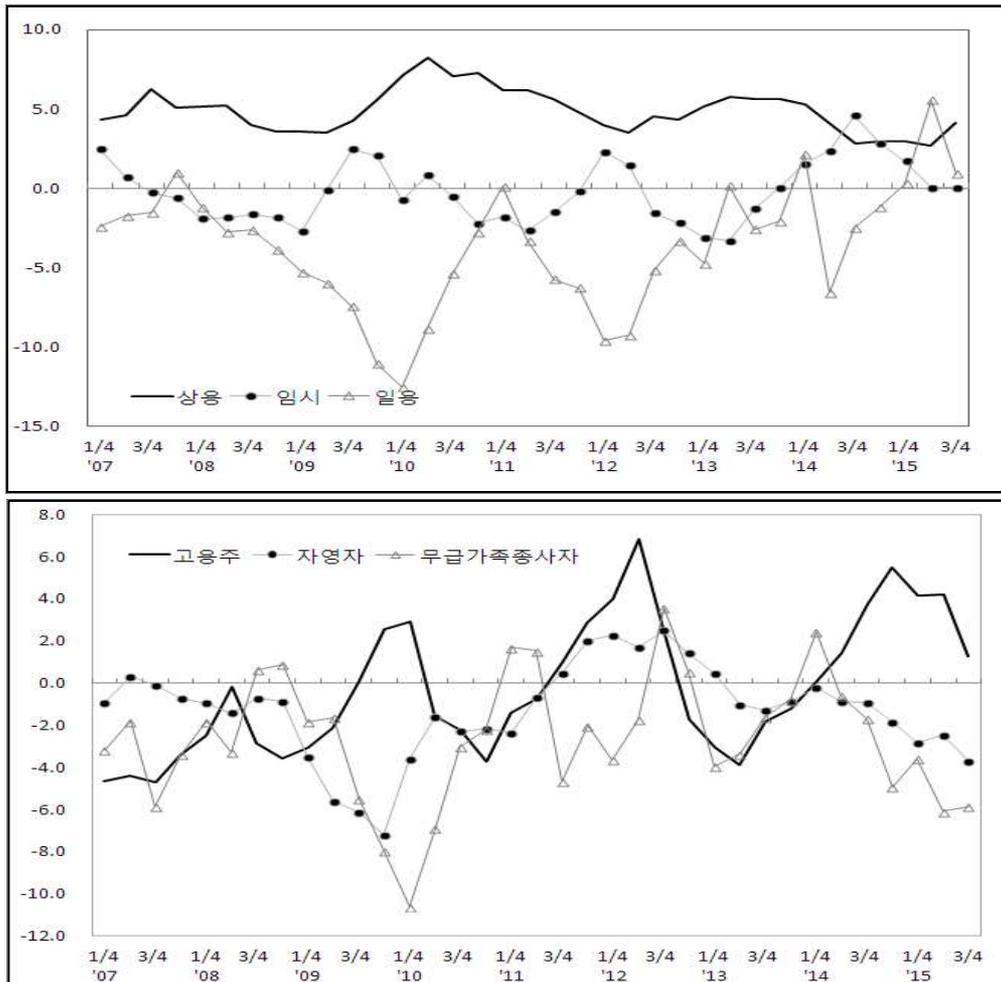
주 : 1) ( ) 안의 수치는 전년동분기대비, 전년동월대비 증가율.

2)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,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.

자료 : 통계청(2015. 10.), 『2015년 9월 고용동향』.

[그림 6] 임금근로자(위) 및 비임금근로자(아래) 증가율 추이

(단위: %, 전년동분기대비)



주: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,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.  
 자료: 통계청, KOSIS.

- 2015년 3/4분기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,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,848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81천 명(-7.3%) 감소한 반면,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,895천 명으로 711천 명(3.5%) 증가하였음.

◆ 제조업,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

○ 2015년 3/4분기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분기대비 증감을 보면, 제조업(165천 명, 3.8%), 건설업(11천 명, 0.6%), 숙박 및 음식점업(86천 명, 4.0%),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(89천 명, 7.6%),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(75천 명, 10.6%) 등에서 증가한 반면, 농림어업(-109천 명, -6.8%), 교육서비스업(-11천 명, -0.6%) 등에서는 감소함.

〈표 5〉 산업별 취업자 동향

(단위 : 천 명, %, 전년동분대비, 전년동월대비)

|                  | 2014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2015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| 1/4분기            | 2/4분기            | 3/4분기            | 9월               | 4/4분기            | 1/4분기            | 2/4분기            | 3/4분기            | 8월               | 9월               |
| 전 산업             | 24,913<br>( 3.0) | 25,790<br>( 1.8) | 25,927<br>( 2.0) | 25,917<br>( 1.8) | 25,767<br>( 1.7) | 25,267<br>( 1.4) | 26,098<br>( 1.2) | 26,237<br>( 1.2) | 26,141<br>( 1.0) | 26,264<br>( 1.3) |
| 농림어업             | 1,179<br>( 1.0)  | 1,631<br>(-3.3)  | 1,603<br>(-7.0)  | 1,609<br>(-7.4)  | 1,395<br>(-7.2)  | 1,092<br>(-7.4)  | 1,505<br>(-7.7)  | 1,494<br>(-6.8)  | 1,482<br>(-7.1)  | 1,489<br>(-7.5)  |
| 제조업              | 4,279<br>( 3.0)  | 4,319<br>( 3.3)  | 4,346<br>( 4.7)  | 4,347<br>( 4.1)  | 4,374<br>( 3.0)  | 4,418<br>( 3.2)  | 4,466<br>( 3.4)  | 4,511<br>( 3.8)  | 4,491<br>( 3.6)  | 4,512<br>( 3.8)  |
| 전기·가스·<br>증기·수도업 | 80<br>(-1.2)     | 80<br>(-16.7)    | 83<br>(-13.5)    | 86<br>(-6.5)     | 88<br>( 0.0)     | 91<br>(13.8)     | 91<br>(13.8)     | 92<br>(10.8)     | 93<br>(10.7)     | 94<br>( 9.3)     |
| 하수,<br>원료재생·복원   | 80<br>(17.6)     | 90<br>(32.4)     | 90<br>(20.0)     | 85<br>(14.9)     | 89<br>(12.7)     | 89<br>(11.3)     | 89<br>(-1.1)     | 89<br>(-1.1)     | 90<br>(-2.2)     | 89<br>( 4.7)     |
| 건설업              | 1,683<br>( 1.6)  | 1,813<br>( 0.7)  | 1,833<br>( 3.3)  | 1,839<br>( 2.9)  | 1,854<br>( 4.0)  | 1,756<br>( 4.3)  | 1,857<br>( 2.4)  | 1,844<br>( 0.6)  | 1,820<br>( 0.6)  | 1,838<br>(-0.1)  |
| 도소매업             | 3,774<br>( 4.4)  | 3,744<br>( 2.6)  | 3,799<br>( 4.1)  | 3,808<br>( 4.1)  | 3,848<br>( 3.4)  | 3,848<br>( 2.0)  | 3,775<br>( 0.8)  | 3,763<br>(-0.9)  | 3,721<br>(-1.9)  | 3,763<br>(-1.2)  |
| 운수업              | 1,418<br>( 1.8)  | 1,408<br>(-0.4)  | 1,400<br>(-1.8)  | 1,397<br>(-1.8)  | 1,402<br>(-1.3)  | 1,402<br>(-1.1)  | 1,410<br>( 0.1)  | 1,415<br>( 1.1)  | 1,422<br>( 1.6)  | 1,413<br>( 1.1)  |
| 숙박 및<br>음식점업     | 2,063<br>( 7.5)  | 2,053<br>( 6.2)  | 2,130<br>( 6.5)  | 2,122<br>( 6.2)  | 2,143<br>( 5.7)  | 2,136<br>( 3.5)  | 2,152<br>( 4.8)  | 2,216<br>( 4.0)  | 2,238<br>( 4.8)  | 2,203<br>( 3.8)  |
| 출판·영상·<br>방송통신 등 | 703<br>( 2.8)    | 733<br>( 5.2)    | 707<br>( 1.1)    | 701<br>( 1.2)    | 713<br>( 3.6)    | 749<br>( 6.5)    | 773<br>( 5.5)    | 782<br>(10.6)    | 781<br>(11.6)    | 780<br>(11.3)    |
| 금융 및 보험업         | 854<br>( 1.5)    | 847<br>(-3.3)    | 836<br>(-5.1)    | 830<br>(-4.3)    | 813<br>(-5.1)    | 788<br>(-7.7)    | 789<br>(-6.8)    | 787<br>(-5.9)    | 786<br>(-5.6)    | 793<br>(-4.5)    |
| 부동산 및<br>임대업     | 507<br>( 6.1)    | 496<br>( 4.2)    | 516<br>( 6.0)    | 525<br>( 6.9)    | 512<br>( 2.4)    | 514<br>( 1.4)    | 535<br>( 7.9)    | 539<br>( 4.5)    | 530<br>( 2.9)    | 542<br>( 3.2)    |
| 전문·과학·<br>기술서비스업 | 1,024<br>(-1.3)  | 1,017<br>( 0.4)  | 1,028<br>( 1.4)  | 1,018<br>(-1.5)  | 1,030<br>( 0.8)  | 1,022<br>(-0.2)  | 1,029<br>( 1.2)  | 1,064<br>( 3.5)  | 1,065<br>( 3.2)  | 1,066<br>( 4.7)  |
| 사업서비스업           | 1,165<br>( 1.1)  | 1,192<br>(-1.2)  | 1,168<br>( 0.2)  | 1,157<br>(-1.6)  | 1,197<br>( 2.5)  | 1,202<br>( 3.2)  | 1,261<br>( 5.8)  | 1,257<br>( 7.6)  | 1,236<br>( 5.5)  | 1,273<br>(10.0)  |

〈표 5〉의 계속

|                 | 2014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2015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| 1/4분기           | 2/4분기           | 3/4분기           | 9월              | 4/4분기           | 1/4분기           | 2/4분기           | 3/4분기           | 8월              | 9월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공공행정 등          | 925<br>( 2.9)   | 1,001<br>( 0.2) | 980<br>(-1.1)   | 981<br>(-1.4)   | 923<br>(-5.1)   | 865<br>(-6.5)   | 960<br>(-4.1)   | 954<br>(-2.7)   | 950<br>(-2.5)   | 952<br>(-3.0)   |
| 교육서비스업          | 1,760<br>( 4.4) | 1,811<br>( 3.4) | 1,827<br>( 2.2) | 1,835<br>( 3.4) | 1,829<br>( 3.6) | 1,802<br>( 2.4) | 1,803<br>(-0.4) | 1,816<br>(-0.6) | 1,815<br>(-0.7) | 1,834<br>(-0.1) |
| 보건업 및<br>사회복지   | 1,569<br>( 8.1) | 1,709<br>( 8.9) | 1,745<br>( 9.1) | 1,761<br>( 9.5) | 1,749<br>( 9.6) | 1,694<br>( 8.0) | 1,776<br>( 3.9) | 1,795<br>( 2.9) | 1,789<br>( 2.8) | 1,829<br>( 3.9) |
| 예술·스포츠·<br>여가   | 384<br>( 1.6)   | 380<br>(-3.3)   | 403<br>( 0.8)   | 405<br>( 1.3)   | 407<br>( 2.5)   | 412<br>( 7.3)   | 438<br>(15.3)   | 431<br>( 6.9)   | 439<br>( 7.9)   | 423<br>( 4.4)   |
| 협회·단체·<br>수리·기타 | 1,310<br>(-0.8) | 1,319<br>( 0.4) | 1,295<br>( 0.5) | 1,277<br>(-1.1) | 1,273<br>(-4.0) | 1,267<br>(-3.3) | 1,277<br>(-3.2) | 1,276<br>(-1.5) | 1,284<br>(-0.9) | 1,258<br>(-1.5) |
| 가구내 및 자가        | 130<br>(-26.1)  | 120<br>(-32.2)  | 111<br>(-36.9)  | 106<br>(-38.0)  | 103<br>(-34.4)  | 94<br>(-27.7)   | 85<br>(-29.2)   | 77<br>(-30.6)   | 77<br>(-31.3)   | 77<br>(-27.4)   |
| 국제 및<br>외국기관    | 11<br>(37.5)    | 13<br>(85.7)    | 16<br>(166.7)   | 16<br>(166.7)   | 17<br>( 88.9)   | 18<br>( 63.6)   | 17<br>( 30.8)   | 20<br>( 25.0)   | 19<br>( 18.8)   | 21<br>( 31.3)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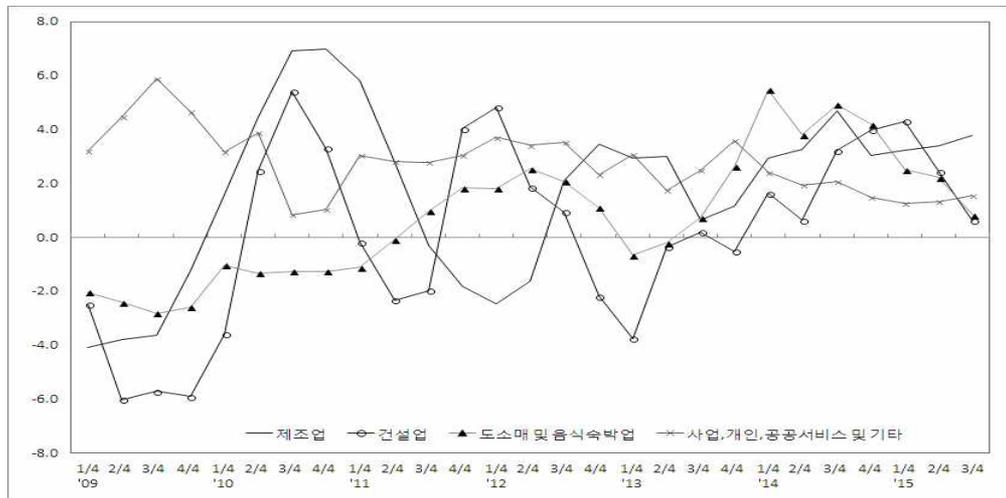
주: 1) ( ) 안의 수치는 전년동분기대비, 전년동월대비 증가율.

2) 9차 개정 산업분류 기준.

자료: 통계청(2015. 10.), 『2015년 9월 고용동향』.

〈그림 7〉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추이

(단위: %, 전년동분기대비)



자료: 통계청, KOSIS.

(조문경, 동향분석팀 연구원)

##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

- ◆ 2015년 7월 명목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4.0% 상승
- 2015년 7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은 전년 동월대비 4.0% 상승한 3,315천 원임.
  - 2015년 7월 상용근로자, 임시·일용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3.8%, 3.9% 상승함.
  -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(3,492천 원)은 전년동월대비 3.8% 상승했는데, 이는 정액급여(3.6%)와 특별급여(3.1%)의 증가율이 컸던 데 기인함.
  - 상용근로자의 기본급 등이 포함된 정액급여 증가율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, 특히 2015년 들어서는 2%대 증가율을 보임. 그러나 2015년 7월 현재 2개월 연속 3.6%를 기록하고 있음.
    - ※ 초과급여: 연장(야근근로 포함)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
    - 특별급여: 상여금, 성과급, 임금인상소급분,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
- 2015년 1~7월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은 전년동평균대비 3.3% 상승함.
  - 2015년 1~7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은 전년동평균대비 3.3% 상승한 3,252천 원임.
  - 상용근로자의 1인당 임금총액(3,435천원, 3.0%)은 전년동월대비 0.6%p 상승했으나 정액급여(3.1%)는 전년동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함.
- 2015년 7월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.2% 상승함.
  - 2015년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(2010=100.0)은 전년동월대비 0.7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상승폭이 둔화된 가운데 명목임금 상승폭은 확대되어 실질임금 상승률은 3.2%를 기록함.
  - 2015년 1~7월 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전년동평균대비 2.7% 상승함. 동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.6% 상승에 그친 반면, 명목임금 상승폭이 확대된 데 기인함.

〈표 6〉 임금 동향(5인 이상 사업체 기준)

(단위 : 천 원, %, 2010=100.0)

|                  | 2012            | 2013            | 2014            | 2015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1~7월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1~7월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평균              | 7월              | 평균              | 7월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전체 근로자<br>임금총액   | 2,995<br>( 5.3) | 3,111<br>( 3.9) | 3,190<br>( 2.5) | 3,148<br>( 2.3) | 3,188<br>( 1.8) | 3,252<br>( 3.3) | 3,315<br>( 4.0) |                 |
| 상용<br>근로자        | 임금총액            | 3,178<br>( 5.3) | 3,299<br>( 3.8) | 3,378<br>( 2.4) | 3,333<br>( 2.4) | 3,365<br>( 1.5) | 3,435<br>( 3.0) | 3,492<br>( 3.8) |
|                  | 정액급여            | 2,470<br>( 5.5) | 2,578<br>( 4.4) | 2,660<br>( 3.2) | 2,647<br>( 3.2) | 2,672<br>( 3.3) | 2,729<br>( 3.1) | 2,769<br>( 3.6) |
|                  | 초과급여            | 181<br>( 1.0)   | 184<br>( 1.7)   | 201<br>( 9.3)   | 198<br>( 8.9)   | 200<br>(10.3)   | 216<br>( 8.7)   | 213<br>( 6.8)   |
|                  | 특별급여            | 527<br>( 5.8)   | 537<br>( 1.8)   | 516<br>(-3.7)   | 488<br>(-4.2)   | 494<br>(-10.1)  | 490<br>( 0.4)   | 509<br>( 3.1)   |
| 임시·일용근로자<br>임금총액 | 1,293<br>( 6.4) | 1,377<br>( 6.5) | 1,387<br>( 0.7) | 1,392<br>( 1.3) | 1,393<br>( 0.5) | 1,414<br>( 1.6) | 1,448<br>( 3.9) |                 |
| 소비자물가지수          | 106.3<br>( 2.2) | 107.8<br>( 1.2) | 109.0<br>( 1.3) | 109.0<br>( 1.4) | 109.3<br>( 1.6) | 109.6<br>( 0.6) | 110.0<br>( 0.7) |                 |
| 실질임금증가율          | 3.1             | 2.5             | 1.3             | 0.9             | 0.3             | 2.7             | 3.2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
- 주 : 1)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.
- 2) 1~7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.
- 3) ( 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
- 4) 9차 산업분류 기준.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『사업체노동력조사』; 한국은행, <http://ecos.bok.or.kr>.

◆ 2015년 9월 협약임금 인상률 4.1%

○ 2015년 9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.2%로 2014년 9월 인상률(4.4%)보다 0.3%p 하락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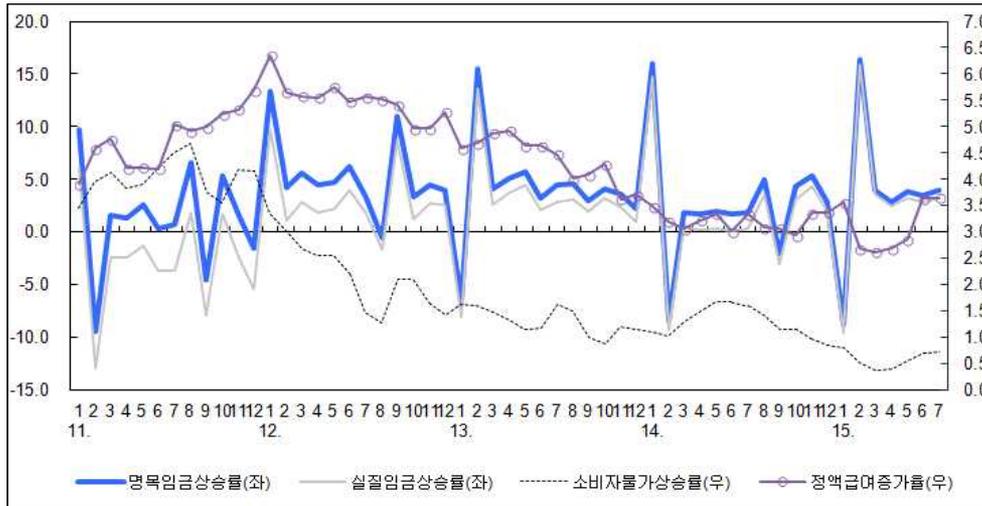
– 2015년 9월 임금결정 진도율은 59.3%로 전년동월(45.2%)보다 높은 수준임.

◆ 2015년 7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은 모든 산업에서 증가

○ 2015년 7월 임금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산업은 광업(9.9%, 3,951천 원)으로 나타났으며, 그 다음으로 운수업(9.1%, 3,105천 원), 협회·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(8.4%, 2,434천 원), 부동산 및 임대업(7.6%, 2,507천 원), 여가관련 서비스업(7.2%, 2,639천 원) 부문에서 임금상승률이 컸던 것으로 나타남.

[그림 8] 임금상승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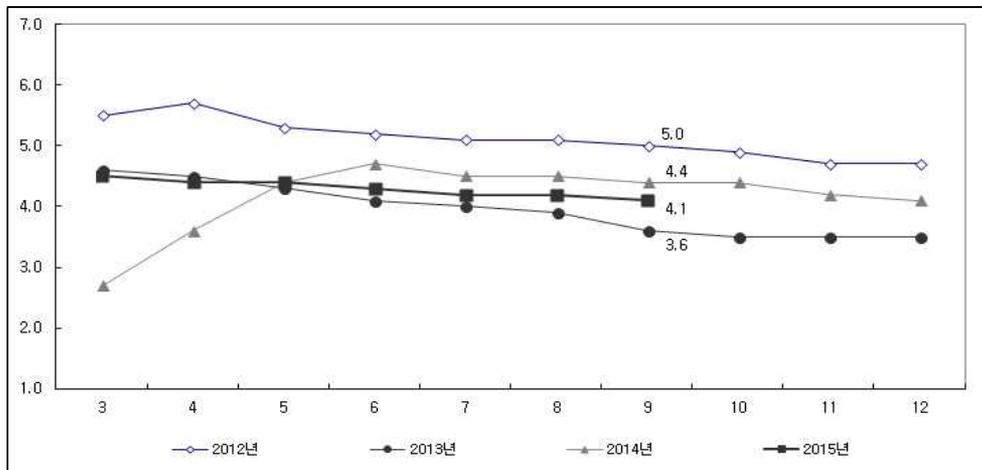
(단위: %, 2010=100.0)



자료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[그림 9]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

(단위: %)



주: 1)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,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.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.

2)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의 누계분 인상률임.

자료: 고용노동부, 「e-나라지표」, www.index.go.kr.

– 반면,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0.8%, 2,752천 원), 출판·영상·방송통신서비스업(1.1%, 3,903천 원), 숙박 및 음식점업(1.3%, 1,741천 원), 도매 및 소매업(1.8%, 3,233천 원) 부문에서는 전 산업 평균 임금상승률을 밑도는 0~1%대 상승률을 보임.

〈표 7〉 산업별 임금 동향(5인 이상 사업체 기준)

(단위: 천 원, %)

|                   | 2013         | 2014         | 2015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1~7월 평균      |              | 7월          |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1~7월 평균      | 7월           | 1~7월 평균     | 7월          |
| 전 산업              | 3,111 ( 3.9) | 3,190 ( 2.5) | 3,148 ( 2.3) | 3,188 ( 1.8) | 3,252 (3.3) | 3,315 (4.0) |
| 광업                | 3,557 ( 2.5) | 3,480 (-2.1) | 3,514 (-2.8) | 3,595 (-1.1) | 3,670 (4.4) | 3,951 (9.9) |
| 제조업               | 3,371 ( 4.7) | 3,506 ( 4.0) | 3,459 ( 4.3) | 3,481 ( 1.6) | 3,556 (2.8) | 3,586 (3.0) |
|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   | 5,542 ( 2.9) | 5,554 ( 0.2) | 5,404 ( 2.2) | 4,813 (-2.7) | 5,603 (3.7) | 4,903 (1.9) |
| 하수·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 | 2,743 ( 3.3) | 2,812 ( 2.5) | 2,756 ( 3.0) | 2,760 ( 1.6) | 2,871 (4.2) | 2,909 (5.4) |
| 건설업               | 2,414 ( 6.2) | 2,497 ( 3.4) | 2,477 ( 2.5) | 2,473 ( 4.0) | 2,585 (4.4) | 2,557 (3.4) |
| 도소매업              | 3,168 ( 1.5) | 3,206 ( 1.2) | 3,151 ( 1.2) | 3,176 ( 1.4) | 3,218 (2.1) | 3,233 (1.8) |
| 운수업               | 2,732 ( 5.5) | 2,805 ( 2.7) | 2,716 ( 1.3) | 2,846 ( 1.2) | 2,880 (6.0) | 3,105 (9.1) |
|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  | 1,772 ( 1.9) | 1,785 ( 0.7) | 1,734 ( 0.5) | 1,720 ( 1.4) | 1,791 (3.3) | 1,741 (1.3) |
| 출판·영상·방송통신서비스업    | 3,936 ( 2.2) | 3,905 (-0.8) | 3,875 (-2.4) | 3,862 (-1.6) | 3,976 (2.6) | 3,903 (1.1) |
| 금융 및 보험업          | 5,058 ( 1.4) | 5,234 ( 3.5) | 5,177 ( 1.1) | 5,119 ( 0.6) | 5,474 (5.7) | 5,320 (3.9) |
| 부동산 및 임대업         | 2,269 ( 3.4) | 2,323 ( 2.3) | 2,299 ( 1.8) | 2,330 (-2.0) | 2,465 (7.2) | 2,507 (7.6) |
|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  | 4,243 ( 3.2) | 4,419 ( 4.2) | 4,303 ( 5.3) | 4,231 ( 4.4) | 4,369 (1.5) | 4,509 (6.6) |
| 사업서비스업            | 1,883 ( 5.2) | 1,924 ( 2.2) | 1,897 ( 2.1) | 1,906 ( 1.7) | 1,980 (4.4) | 2,003 (5.1) |
| 교육서비스업            | 3,261 ( 4.4) | 3,375 ( 3.5) | 3,409 ( 1.8) | 3,911 ( 3.5) | 3,545 (4.0) | 4,172 (6.7) |
|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   | 2,662 ( 2.0) | 2,700 ( 1.4) | 2,639 (-0.2) | 2,730 ( 2.9) | 2,749 (4.1) | 2,752 (0.8) |
|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     | 2,326 ( 5.2) | 2,398 ( 3.1) | 2,386 ( 3.4) | 2,461 ( 0.1) | 2,447 (2.6) | 2,639 (7.2) |
| 협회·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| 2,226 (-0.1) | 2,249 ( 1.0) | 2,206 (-0.2) | 2,245 ( 1.6) | 2,268 (2.8) | 2,434 (8.4) |

주: 1)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.  
 2) 1~7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.  
 3) ( 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  
 4) 9차 산업분류 기준.

자료: 고용노동부, 『사업체노동력조사』.

－ 제조업 임금상승률 또한 전년동월대비 3.0% 상승에 그침.

○ 2015년 1~7월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은 전 산업에서 전년동평균대비 증가함.

－ 2015년 1~7월 평균 임금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산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(7.2%, 2,465천 원)으로 나타났으며, 그 다음으로 운수업(6.0%, 2,880천 원), 금융 및 보험업(5.7%, 5,474천 원), 운수업(5.5%) 순으로 임금상승률이 높았음.

－ 다만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1.5%, 4,369천 원), 도매 및 소매업(2.1%, 3,218천 원), 여가관련 서비스업(2.6%, 2,447천 원), 출판·영상·방송통신서비스업(2.6%, 3,976천 원), 협회·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(2.8%, 2,268천 원), 제조업(2.8%, 3,556천 원) 부문은 전 산업 평균 임금상승률을 밑도는 1~2%대 상승률을 보임.

- ◆ 2015년 7월 중소기업·대규모 사업체 평균 임금총액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3.7%, 3.3% 상승
- 2015년 7월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을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, 중소기업 사업체의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소기업과 대규모 사업체 간 임금격차는 여전히 전한 것으로 나타남.
- 2015년 7월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 또한 중소기업·대규모 사업체에서 모두 상승함.
  - 2015년 7월 기준 5~299인 중소기업의 1인당 상용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3.5% 상승한 3,136천 원임.
  -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1인당 상용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3.3% 상승한 4,909천 원임.
- 2015년 7월 비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 또한 중소기업·대규모 사업체 모두 증가함.
  - 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3.8% 상승한 1,600천 원, 중소기업의 비상용근로자의 1인당 평균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3.9% 상승한 1,436천 원임.
- 2015년 1~7월 평균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은 중소기업·대규모 사업체 모두에서 상승함.
  - 중소기업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(3,068천 원)은 전년동평균대비 3.6% 상승하였고,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(4,942천 원)은 전년동평균대비 4.5% 상승함으로써 대규모 사업체에서 임금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.
  - 1~7월 평균 중소기업·대규모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은 주로 정액급여의 상승에 기인하고 있음. 하지만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(1~7월 평균)의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면, 중소기업 사업체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사업체의 정액급여 증가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.
  - 사업체 규모별로 1~7월 평균 비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을 보면, 중소기업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는 전년동평균대비 1.7% 상승한 1,418천 원인 반면, 대규모 사업체 비상용근로자는 1.0% 상승한 1,369천 원임.

〈표 8〉 사업체규모별 임금 동향(5인 이상 사업체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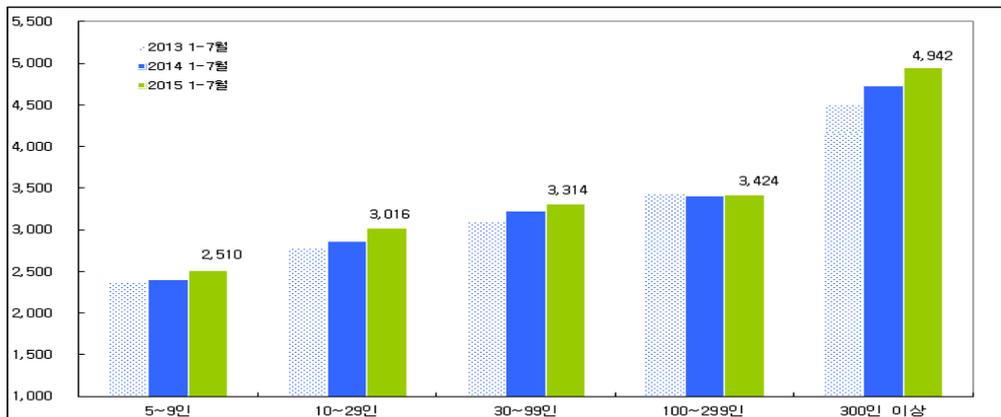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원, %)

|                 |         | 2013         | 2014         | 2015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1~7월<br>평균  | 7월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전 규모<br>(5인 이상) | 전 체     | 3,111 ( 3.9) | 3,190 ( 2.5) | 3,148( 2.3) | 3,188( 1.8) | 3,252( 3.3) | 3,315( 4.0) |
|                 | 상용임금총액  | 3,299 ( 3.8) | 3,378 ( 2.4) | 3,333( 2.4) | 3,365( 1.5) | 3,435( 3.0) | 3,492( 3.8) |
|                 | 정액급여    | 2,578 ( 4.4) | 2,660 ( 3.2) | 2,647( 3.2) | 2,672( 3.3) | 2,729( 3.1) | 2,769( 3.6) |
|                 | 초과급여    | 184 ( 1.7)   | 201 ( 9.3)   | 198( 8.9)   | 200(10.3)   | 216( 8.7)   | 213( 6.8)   |
|                 | 특별급여    | 537 ( 1.8)   | 516 (-3.7)   | 488(-4.2)   | 494(-10.1)  | 490( 0.4)   | 509( 3.1)   |
|                 | 비상용임금총액 | 1,377 ( 6.5) | 1,387 ( 0.7) | 1,392( 1.3) | 1,393( 0.5) | 1,414( 1.6) | 1,448( 3.9) |
| 5~299인          | 소 계     | 2,764 ( 3.8) | 2,836 ( 2.6) | 2,791( 2.0) | 2,861( 2.5) | 2,901( 3.9) | 2,968( 3.7) |
|                 | 상용임금총액  | 2,938 ( 3.7) | 3,008 ( 2.4) | 2,962( 2.0) | 3,030( 2.0) | 3,068( 3.6) | 3,136( 3.5) |
|                 | 정액급여    | 2,433 ( 4.3) | 2,504 ( 2.9) | 2,490( 2.9) | 2,514( 2.9) | 2,567( 3.1) | 2,597( 3.3) |
|                 | 초과급여    | 160 ( 3.0)   | 172 ( 7.5)   | 170( 6.8)   | 175( 8.5)   | 182( 7.2)   | 184( 5.5)   |
|                 | 특별급여    | 345 (-0.3)   | 332 (-3.6)   | 301(-6.9)   | 341(-6.7)   | 319( 5.7)   | 355( 4.0)   |
|                 | 비상용임금총액 | 1,392 ( 7.0) | 1,390 (-0.1) | 1,395( 0.5) | 1,383(-0.6) | 1,418( 1.7) | 1,436( 3.9) |
| 300인<br>이상      | 소 계     | 4,447 ( 3.7) | 4,678 ( 5.2) | 4,591( 4.6) | 4,648( 4.6) | 4,790( 4.3) | 4,800( 3.3) |
|                 | 상용임금총액  | 4,583 ( 3.6) | 4,827 ( 5.3) | 4,730( 4.8) | 4,751( 4.4) | 4,942( 4.5) | 4,909( 3.3) |
|                 | 정액급여    | 3,093 ( 4.3) | 3,272 ( 5.8) | 3,234( 5.1) | 3,325( 7.4) | 3,395( 5.0) | 3,456( 4.0) |
|                 | 초과급여    | 270 (-1.6)   | 316 (16.9)   | 305(15.4)   | 302(20.0)   | 353(15.7)   | 328( 8.6)   |
|                 | 특별급여    | 1,220 ( 3.0) | 1,239 ( 1.5) | 1,190( 1.6) | 1,124(-6.6) | 1,194( 0.3) | 1,124( 0.0) |
|                 | 비상용임금총액 | 1,219 ( 0.8) | 1,354 (11.1) | 1,356(11.4) | 1,542(16.1) | 1,369( 1.0) | 1,600( 3.8) |

주 : 1)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.  
 2) 1~7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.  
 3) ( 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월평균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  
 자료 : 고용노동부, 『사업체노동력조사』.

〈그림 10〉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1인당 1~7월 평균 임금총액(5인 이상 사업체 기준)

(단위 : 천 원)



주 :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.  
 자료 : 고용노동부, 『사업체노동력조사』.

- ◆ 2015년 7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.4% 증가한 186.1시간  
(월력상 근로일수는 23일로 전년동일과 같음)
- 2015년 7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.8시간 증가한 186.1시간임.
  - 상용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근로시간(191.8시간)과 소정실근로시간(179.1시간)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0.4%, 0.6% 증가한 반면, 초과근로시간(12.7시간)은 전년동월대비 2.3% 감소함.
  - 비상용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근로시간은 125.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.8% 감소함.
- 2015년 1~7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0.2% 증가한 172.8시간임.
  - 2015년 1~7월 평균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총근로시간(178.6시간)은 전년동평균대비 0.3% 증가한 반면, 비상용근로자(114.3시간)는 전년동평균대비 3.1% 감소함.

〈표 9〉 근로시간 동향(5인 이상 사업체 기준)

(단위: 천 원, %)

|            | 2013         | 2014         | 2015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1~7월 평균      |              | 7월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1~7월 평균      | 7월           | 1~7월 평균      | 7월           |
| 전체 근로시간    | 172.6 (-1.0) | 171.4 (-0.7) | 172.4 (-1.1) | 185.3 ( 0.2) | 172.8 ( 0.2) | 186.1 ( 0.4) |
| 상용 총근로시간   | 178.1 (-1.0) | 177.1 (-0.6) | 178.1 (-0.9) | 191.1 ( 0.1) | 178.6 ( 0.3) | 191.8 ( 0.4) |
|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| 165.6 (-1.0) | 164.1 (-0.9) | 165.1 (-1.4) | 178.1 (-0.3) | 165.7 ( 0.4) | 179.1 ( 0.6) |
| 상용 초과근로시간  | 12.5 (-2.3)  | 12.9 ( 3.2)  | 13.0 ( 5.7)  | 13.0 ( 5.7)  | 13.0 ( 0.0)  | 12.7 (-2.3)  |
| 비상용근로시간    | 122.5 ( 0.2) | 117 (-4.5)   | 118.0 (-5.1) | 126.7 (-1.6) | 114.3 (-3.1) | 125.7 (-0.8) |

주: 1)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.

2) 1~7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.

3) ( 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

자료: 고용노동부, 『사업체노동력조사』.

- 2015년 7월 산업별 평균 총근로시간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함.
  -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(-1.8%, 181.2시간), 협회·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(-1.4%, 177.5시간), 금융 및 보험업(-0.4%, 179.7시간), 광업(-0.2%, 191.7시간) 부문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함.
  - 이외 대부분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평균 총근로시간 증가함. 특히 교육서비스업(1.1%, 168.7시간)의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, 그 다음으로 여가관련 서비스업(1.0%, 172.6시간), 출판·영상·방송통신서비스업(1.0%, 179.5시간) 순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함.

- 2015년 7월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던 산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(204.3시간),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(200.1시간)으로 나타남.
- 2015년 1~7월 산업별 평균 총근로시간은 건설업, 교육서비스업 등 몇몇 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산업에서 전년동평균대비 증가함.
  - 부동산 및 임대업(1.2%, 192.7시간)은 근로시간이 전년동평균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이며,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으로 나타남. 이외 근로시간이 많이 증가한 산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0.9%, 171.5시간)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0.7%, 165.2시간), 숙박 및 음식점업(0.7%, 174.9시간)으로 나타남.

〈표 10〉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(5인 이상 사업체 기준)

(단위 : 시간, %)

|                  | 2013        | 2014        | 2015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1~7월 평균     | 7월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전 산업             | 172.6(-1.0) | 171.4(-0.7) | 172.4(-1.1) | 185.3( 0.2) | 172.8( 0.2) | 186.1( 0.4) |
| 광업               | 180.6(-2.5) | 179.4(-0.7) | 179.9(-1.3) | 192.1( 0.8) | 179.7(-0.1) | 191.7(-0.2) |
| 제조업              | 185.0(-0.8) | 185.4(0.2)  | 187.4( 0.5) | 200.0( 1.7) | 187.0(-0.2) | 200.1( 0.0) |
|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  | 173.4(-1.2) | 170.5(-1.7) | 171.1(-2.6) | 184.2( 0.5) | 171.5( 0.2) | 181.2(-1.6) |
| 하수·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| 182.0(-1.5) | 177.8(-2.3) | 178.6(-2.9) | 190.6(-3.3) | 177.7(-0.5) | 191.3( 0.4) |
| 건설업              | 152.7( 0.1) | 148.5(-2.8) | 149.3(-4.0) | 159.1(-1.7) | 147.4(-1.3) | 159.9( 0.5) |
| 도소매업             | 173.4(-0.6) | 172.3(-0.6) | 173.1(-1.1) | 186.5(-0.2) | 173.6( 0.3) | 186.6( 0.1) |
| 운수업              | 177.8(-2.1) | 173.1(-2.6) | 173.4(-3.1) | 183.6(-2.1) | 173.7( 0.2) | 184.6( 0.5) |
|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 | 177.3(-5.0) | 175.2(-1.2) | 173.7(-1.3) | 179.7( 0.8) | 174.9( 0.7) | 181.2( 0.8) |
| 출판·영상·방송통신서비스업   | 163.0(-0.5) | 161.9(-0.7) | 163.5(-0.7) | 177.7( 0.1) | 164.5( 0.6) | 179.5( 1.0) |
| 금융 및 보험업         | 162.7(-0.4) | 163.4(0.4)  | 164.6(-0.1) | 180.4( 0.7) | 164.8( 0.1) | 179.7(-0.4) |
|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    | 191.5(-1.0) | 190.1(-0.7) | 190.4(-1.7) | 202.6( 0.1) | 192.7( 1.2) | 204.3( 0.8) |
|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 | 163.9(-0.8) | 163.3(-0.4) | 164.0(-1.0) | 178.3( 0.1) | 165.2( 0.7) | 179.4( 0.6) |
| 사업서비스업           | 172.3(-0.5) | 171.9(-0.2) | 172.4(-0.7) | 185.0(-0.6) | 172.5( 0.1) | 185.9( 0.5) |
| 교육서비스업           | 150.6(-0.3) | 152(0.9)    | 153.7( 1.1) | 166.8(-0.8) | 152.6(-0.7) | 168.7( 1.1) |
|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  | 172.0(-1.6) | 169.6(-1.4) | 170.0(-2.4) | 182.8(-1.7) | 171.5( 0.9) | 183.7( 0.5) |
|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    | 158.0(-0.1) | 158.9(0.6)  | 159.7( 0.7) | 170.9( 2.3) | 160.3( 0.4) | 172.6( 1.0) |
| 협회·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| 167.5(-0.8) | 162.9(-2.7) | 164.2(-3.1) | 180.1(-0.5) | 163.1(-0.7) | 177.5(-1.4) |

주 : 1)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.  
 2) 1~7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.  
 3) ( 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대비,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임.  
 4) 9차 산업분류 기준.  
 자료 : 고용노동부, 『사업체노동력조사』.

－ 반면, 전년동평균대비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(-1.3%, 147.4시간)이며, 건설업은 근로시간이 가장 짧았던 산업으로도 나타남. 이외에도 근로시간이 감소한 산업은 교육서비스업(-0.7%, 152.6시간), 협회·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(-0.7%, 163.1시간), 제조업(-0.2%, 187.0시간) 등 일부 산업임.

○ 2015년 7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중소기업에서만 전년동월대비 0.5% 증가함.

－ 중소기업 사업체(5~299인)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.5% 증가한 186.5시간임. 반면, 대규모 사업체(300인 이상)에서의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과 같은 184.2시간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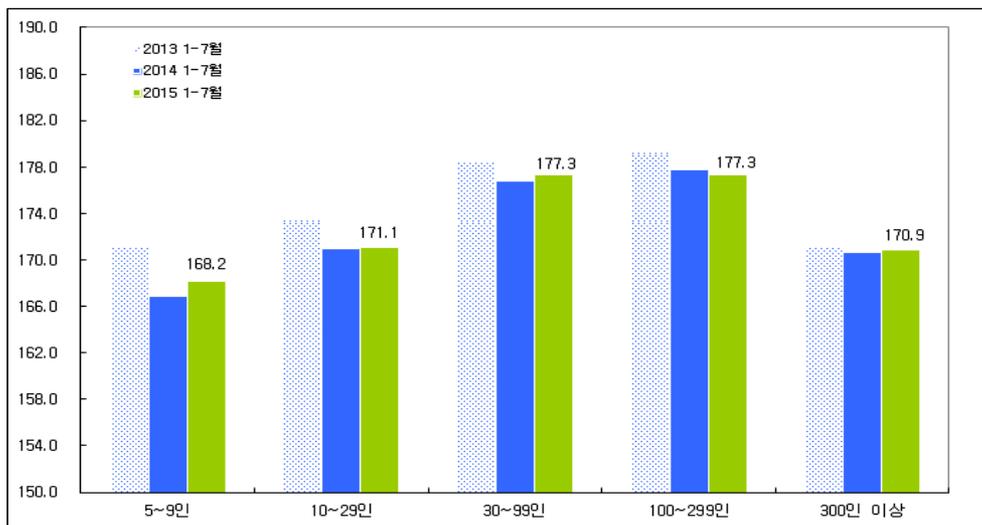
－ 중소기업 사업체를 세부 규모별로 보면, 5~9인 사업체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.1% 증가한 181.0시간, 10~29인 사업체는 0.4% 증가한 185.0시간, 30~99인 사업체는 0.8% 증가한 190.0시간을 기록함. 반면, 100~299인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오히려 전년동월대비 0.6% 감소했으나 중소기업 사업체 중 근로시간(190.5시간)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.

○ 2015년 1~7월 평균 사업체 규모별 총근로시간은 중소기업·대규모 사업체 모두 증가함.

－ 중소기업 사업체(5~299인)의 1~7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0.5% 증가한 173.3시간이며, 세부 규모별로 보면, 5~9인 사업체는 0.8% 증가한 168.2시

[그림 11] 사업체규모별 1~7월 평균 근로시간 추이(5인 이상 사업체 기준)

(단위: 시간)



주: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.  
 자료: 고용노동부, 『사업체노동력조사』.

- 간, 10~29인 사업체는 0.1% 증가한 171.1시간, 30~99인 사업체는 0.3% 증가한 177.3시간인 반면, 100~299인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0.3% 감소한 177.3시간으로 나타남.
-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1~7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0.1% 증가한 170.9시간으로 나타남.

(김복순, 동향분석팀 전문위원)

##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

### ◆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

- 지난 9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649건(이월사건 포함건수)
  - 지난 9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(673건)보다 24건 적은 수치임.
- 지난 9월 조정성립률 51.4%
  - 지난 9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조정성립률 52.6%에 비해 1.2% 낮아진 수치임.

〈표 11〉 2015년, 2014년 9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

|         | 접수 건수 | 처리 건수 | 조정성립 |        |       | 조정불성립 |        |       | 행정 지도 | 취하 철회 | 진행중 | 조정 성립률 |
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|
|         |       |       | 소계 A | 조정안 수락 | 합의 취하 | 소계 B  | 조정안 거부 | 조정 중지 |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|
| 2015. 9 | 649   | 617   | 259  | 103    | 156   | 245   | 33     | 212   | 31    | 82    | 32  | 51.4   |
| 2014. 9 | 673   | 635   | 273  | 116    | 157   | 246   | 33     | 213   | 41    | 75    | 38  | 52.6   |

자료 : 중앙노동위원회, 「사건통계」.

### ◆ 복수노조조사건

- 지난 9월 복수노조조사건 접수건수는 464건(이월사건 포함건수)
  - 지난 9월 복수노조조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(285건)보다 179건 많은 수치임.
  - 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34.5%(153건), 기각·각하·취하비율이 65.5%(290건)를 차지함.

〈표 12〉 2015년, 2014년 9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

|         | 접수<br>건수 | 처리내역 |          |          |    |     |     |    | 진행중 |
|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|-----|-----|----|-----|
|         |          | 계    | 전부<br>인정 | 일부<br>인정 | 기각 | 각하  | 취하  | 화해 |     |
| 2015. 9 | 464      | 443  | 153      | 0        | 73 | 109 | 108 | 0  | 20  |
| 2014. 9 | 285      | 264  | 76       | 4        | 63 | 32  | 89  | 0  | 20  |

자료 : 중앙노동위원회, 「사건통계」.

◆ 고용노동부 및 고용노동분야 3대 학회, 임금피크제 모델 안 제시

-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분야 3대 학회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, 한국인사조직학회, 한국인사관리학회는 지난달 15일 금융·제약·조선·도소매·자동차 부품 등 5개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모델안 발표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음.
  - 3대 학회의 모델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른 기업부담과 청년고용 위축 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, 학회 차원에서도 임금피크제에 주목한 것이라고 밝힘.
  - 고용노사관계학회의 조준모 학회장은 “궁극적으로는 정년연장에 따른 현재의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이 지향점이지만,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 등 완충장치가 필요하다”며 “이번 모델안은 동종업계 사례들과 함께 제시되어 개별 기업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”이라고 말함.
- 5개 업종에 대한 임금피크제 모델안은 다음과 같음.
  - 금융업 임금피크제는 높은 연공성과 고임금 구조 등을 감안하여 임금조정률은 높게 설정하되, 은행업과 기타 금융업으로 구분하고,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됨.
  - 제약업은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성 하락에 따른 통상적인 임금조정 수준과 기존 도입사례가 유사하여 이를 토대로 제시됨.
  - 조선업은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대기업들과 협력사들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, 인사노무관리방식도 영향을 받으므로 선도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상황에 맞게 설계하는 방안이 제시됨.
  - 도소매업은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성 하락에 따른 통상적인 임금조정 수준과 기존 도입사례가 유사하여 이를 토대로 제시되었으며, 그 유형은 세부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다고 밝힘.
  - 자동차부품업은 업종 특성상 중소기업이 많은 점과 기존 도입사례 등을 고려하여 제시됨.

〈표 13〉 업종별 임금피크제 도입실태와 모델안 비교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금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약                         | 조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도소매                        | 자동차부품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도입<br>실태    | 평균<br>정년     | 59.3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8.3세                      | 57.6세                         | 58세                        | 58.4세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조정<br>기간     | 4.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.4년                       | 2.7년                          | 4.2년                       | 2.4년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조정률<br>(연평균) | 39.6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1%                        | 16.3%                         | 19.5%                      | 17.9%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조정<br>방식     | 단계적<br>조정<br>(84.4%)                    | 단계적<br>조정<br>(63.6%)       | 단계적<br>조정<br>(63.2%)          | 단계적<br>조정,<br>조정 후 유지      | 단계적<br>조정<br>(58.3%)       |
| 모<br>델<br>안 | 적용<br>대상     | 전체 근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체 근로자                     | 전체 근로자                        | 전체 근로자<br>* 캐셔, 진열<br>등 제외 | 전체 근로자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조정<br>시기     | 기존정년 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존정년 이후                    | 기존정년 이후                       | 기존정년 이후                    | 기존정년 이후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조정률<br>(연평균) | 은행 40~50%,<br>보험 등<br>25~30%            | 20% 내외<br>일반적              | 10~20% 내외<br>일반적              | 15~20% 내외<br>일반적           | 15~20% 내외<br>일반적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조정<br>방법     | 단계적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단계적 조정                     | 단계적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| 단계적 조정                     | 단계적 조정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복리<br>후생     | 현행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승급 /<br>베이스업 | 정기승급<br>미반영 /<br>베이스업<br>노사협의로<br>반영 가능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특징           | 업권별로<br>조정률이<br>상이함                     | 매출액 대비<br>인건비 비중이<br>매우 높음 | 인력 부족<br>등으로<br>조정률이<br>높지 않음 | 세부 업종이<br>많아 유형이<br>다양함    | 중소기업이<br>많고, 조정률이<br>높지 않음 |

자료: 고용노동부, 「업종별 임금피크제 모델안 발표」, 2015.10.

- 고용노동부와 3개 학회가 지난달 15일 금융·제약·조선·도소매·자동차 부품 등 5개 업종의 임금피크제 모델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, 한국노총은 정부가 학회를 앞세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성명을 통해 비판함.
  -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 모델 발표는 정부가 노사정협의당시 “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,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”고 한 합의를 무시한 것이고, 모델안을 마련하기 전에 노사정 공동으로 어떠한 토론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함.

◆ 최저임금위원회, 5개 분야·16개 제도개선 의제 집중 논의

- 최저임금위원회는 하반기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논의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것에 따라 「제도개선위원회」를 구성하고, 최저임금 관련 제도적 현안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함.
  - － 제도개선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노·사·공익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, 금년 12월 말까지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여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임.
  - － 노사가 제출한 중장기 과제를 5개 분야 16개 의제로 정리하였음.
  - － 제도개선위원회의 박준성 위원장은 “위원회가 갈등의 수위를 낮추고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심의를 하려면 제도의 현실적합성을 높여야 한다.”면서 “어려움이 없진 않겠지만 접점을 잘 찾아 선진국형 최저임금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.”고 밝힘.

◆ 안전보건공단, 산업현장 근골격계질환 주의보

-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, 최근 5년간 근골격계질환은 매년 5천명 이상이 발생(업무상질병자 10명 중 7명)하였고, 산업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군으로 나타남.
  - － 신체 일부분의 과도한 사용이나,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이 업무상질병자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자 5천 174명을 분석한 결과,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5.8%로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으며, 다음으로 서비스업(36.9%), 건설업(10.8%) 순으로 나타남.
  - －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전체 근골격계질환자의 66.3%가 발생했으며, 연령별 발생 비율은 40대가 31.1%, 그리고 50대 이상의 장년층은 41.5%로 나타남.
-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자동차 제조 등 근골격계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약 5천 700여개 사업장을 선정하고, 이에 대한 중점 기술지원에 나서고 있음.
  - － 올해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사업장 3,353개소에 대하여 현재까지 작업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,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도 하고 있음.

〈표 14〉 최저임금위원회의 5개 분야 16개 제도개선 의제

| 5개 분야                 | 16개 의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| 노동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영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운영     | ①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<br>공익위원 노·사 단체 추천<br>② 최저임금위원회 역할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최저임금 위원수 및 적용주기 조정<br>② 최저임금위원회 예산 및 조직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결정방식   | ③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구축<br>④ 생계비 통계의 공신력 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최저임금 산입범위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<br>⑤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재정비 및<br>지역별 택시 최저임금 산출                   |
| 4. 최저임금의 종류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⑥ 업종별·지역별 최저임금제도 도입<br>⑦ 직능별·연령대별 최저임금 차등화<br>⑧ 수습근로자, 감시단속근로자<br>감액규정 재검토 |
| 5. 최저임금 법 준수 및 실효성 확보 | ⑤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및<br>위반 제재 강화<br>⑥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제도<br>도입<br>⑦ 공공부문의 선도적 준수대책 제시<br>⑧ 대기업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<br>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방안 마련<br>및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<br>적용으로 입찰계약제도 개편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자료: 고용노동부, 「13차 전원회의 1차 제도개선위원회」, 2015.10.

〈표 15〉 최근 5년간 업무상질병자 및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상황

|                  | 2010               | 2011               | 2012               | 2013               | 2014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업무상질병자           | 7,803명             | 7,247명             | 7,472명             | 7,627명             | 7,678명             |
| 근골격계질환자<br>(점유율) | 5,502명<br>(70.51%) | 5,077명<br>(70.06%) | 5,327명<br>(71.29%) | 5,446명<br>(71.40%) | 5,174명<br>(67.39%) |

주: 업무상질병은 근골격계질환, 뇌심혈관계질환,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
 자료: 안전보건공단, 「산업현장 근골격계질환 조심하세요」, 2015.10.

〈표 16〉 2014년 산업별 근골격계질환자 발생비율

|             | 합계               | 제조업               | 서비스업<br>(기타의 사업)  | 건설업             | 운수·창고<br>· 통신업 | 농·임·<br>광·어업  | 금융·<br>보험업    | 전기가스 및<br>상수도업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근골격계<br>질환자 | 5,174명<br>(100%) | 2,368명<br>(45.8%) | 1,908명<br>(36.9%) | 559명<br>(10.8%) | 220명<br>(4.3%) | 89명<br>(1.7%) | 27명<br>(0.5%) | 3명<br>(0.1%)   |

자료 : 안전보건공단, 「산업현장 근골격계질환 조심하세요」, 2015.10.

-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“근골격계질환은 2010년 이후 매년 5천명대 수준으로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다.”며, “장년근로자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의 근골격계질환예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체계적 예방활동이 요구된다.”고 밝힘.

◆ 민주노총, 공공노동자 파업대회 개최

- 민주노총은 지난달 15일 대학로에서 공공부문 노동자 1만5천여명(노동조합 추산)이 참석한 가운데 ‘민주노총 공공노동자 파업 대회’를 개최함.
  -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에서 △쉬운 해고·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약 정책 중단, △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강압 및 성과연봉제·퇴출제 중단, △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선공약 연내 완전 이행 등 3대 요구사항 이행을 정부에 촉구함.
  - 국제공공노련·노르웨이지역정부공공서비스노조·독일서비스노조·일본지방자치단체노조 등 국제 노동단체들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정책에 우려를 나타냄.
  -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“정부가 임금피크제 강행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·퇴출제 가이드라인 발표를 중단하지 않으면 공공노동자들이 강력한 총파업을 전개할 것”이라며 “정부를 심판하는 11월 민중총궐기와 12월 노동개약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에 공공노동자들이 앞장서겠다.”고 밝힘.

◆ 국제노동기구(ILO) 189개 협약 중 한국은 비준협약 27개에 불과

- 한국ILO협회가 주관한 ‘한국 ILO 가입과 25년의 과제’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1991년에 ILO에 가입하였고 지난해 6월 정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나, 국제노동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됨.
  - 우리나라의 비준협약은 ILO가 권고한 189개 협약 가운데 27개에 불과함.
  - 이는 ILO 185개 회원국 평균 비준협약 42개(지난해 말 기준) 보다 적고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평균(73개)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임.

- 한국은 ILO 핵심협약 8개 중 4개만 비준한 상태로,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은 협약은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, 강제근로 철폐에 관한 협약,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, 및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 등임.
- 한 전문가는 “오늘날 세계화 추세에서 노동 분야에 대한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한국 노동외교의 핵심 속성은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다.”고 밝히고 “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ILO에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개선할 점이 많기에 노동법·노사관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혁신해 나가야 한다.”고 말함.
- 한국 ILO협회 권중동 회장은 “현 시대는 인간다운 노동과 노동의 존엄성을 요구하고 있고 ILO는 이를 위해 디센트 워크(Decent Work: 양질의 품위 있는 일자리)를 요구하고 있다.”며 “그것이 실현될 때 지속가능한 사회·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.”고 말함.

◆ 임금피크제, 민간으로 확산과 노사갈등 발생

- 전국경제인연합회가 ‘주요 21개 그룹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’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·LG·롯데·포스코 등 11개 대기업 그룹들은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함.
  -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“정년연장에 따른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나, 내년부터 전 계열사에서 실시하는 그룹들이 절반 밖에 안 된다.”라며, “노사 협력이 절실한 때”라고 지적함.
- 그러나, 일부 대기업에서는 본사 방침으로 전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을 겪고 있음.
  - 한화갤러리아는 최근 진행 중인 임금협상에서 임금피크제 시행방안을 제시하였고, 이에 노동조합은 결의대회를 갖고 회사의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발함.
  - 사측이 내놓은 안은 법정 정년연장에 따라 내년부터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, 55세부터 매년 기본급의 10%씩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임.
  - 또한, 사측은 교섭 석상에서 “노조가 본사 방침을 수용하지 않으면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하기 어려울 것”이라고 밝혔다고 전해짐.
  - 한화 갤러리아 노동조합 위원장은 “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동자들의 정년을 늘리자는 것이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약칭, ‘고령자고용법’)의 개정 취지인데, 회사는 임금 삭감만을 원하고 있다.”며 “회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”이라고 말함. **KLI**

(정재우, 동향분석팀 연구원)

〈표 17〉 주요 대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

| 그룹명    |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삼성     | - '16년 전 계열사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현대자동차  | - 전 계열사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협상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SK     | - SK텔레콤, SK하이닉스, SKC, 위커텔 등 대부분 계열사 도입 완료<br>- 나머지 계열사 연내 도입 추진 협의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LG     | - 그룹 전체 계열사가 임금피크제 시행 중<br>- LG전자 등 현재 정년을 58세로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인 전자계열은 정년기준을 60세로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롯데     | - 2016년부터 전 계열사 시행(롯데제과, 롯데홈쇼핑 기 시행 중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포스코    | - 포스코 캠펙, 포스코강관 등 '16년부터 임금피크제 확대(58세 → 60세) 적용 (56세부터 종전 임금의 90%, 57세는 80%, 58세 이후 70% 지급)<br>- '16년까지 전 계열사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GS     | - GS칼텍스, GS리테일, GS에너지, GS홈쇼핑, GS E&R 등은 이미 시행 중<br>- '16년부터 모든 계열사로 확대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현대중공업  | - 조선3사(현대중공업, 현대미포조선, 현대삼호중공업)는 기 시행 중<br>- '16년 이후 시행 계열사 확대 협의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한진     | - 대한항공, 한진해운, (주)한진 등 전 계열사 '16년 시행(노사합의 완료),<br>-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일부 계열사는 '17년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한화     | - 한화그룹은 총 27개 계열사 중 (주)한화, 한화케미칼, 한화첨단소재 등 21개 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'16년부터 시행 예정<br>- 한화생명, 한화손해보험, 한화갤러리아 등 3개 사는 노사협상 진행 중<br>- 한화역사, 한화자산운용 등 소규모 2개 사는 '16년 상반기 중 도입하여 '17년 1월 시행 예정.<br>- 한화증권은 개별연봉제 시행 중으로 도입이 필요치 않음. |
| KT     | - KT, Kt is, Kt cs 등은 '15년 도입 및 시행 중,<br>- KT service(북부/남부) '16년 시행 예정<br>- 나머지 계열사 도입 검토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두산     | - 두산중공업, 두산인프라코어 등 주요 계열사 임금피크제 조기시행 중<br>- 미시행 일부 계열사는 '16년 1월부터 시행(노사합의 완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신세계    | - '15년 상반기부터 전 계열사 도입/시행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CJ     | - '16년 전 계열사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LS     | - '07년 LS전선을 시작으로 '15년 10월 현재 6개 계열사 도입 완료<br>- '16년 전 계열사로 확대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금호아시아나 | - 아시아나항공, 아시아나에어포트 등 이미 시행 중<br>- 미시행 계열사는 '16년, '17년 시행을 위해 관련 절차 진행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림     | - '16년부터 전 계열사 시행(300인 미만 사업장은 '17년부터 시행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동부     | - 300인 이상 전 계열사 2016년 도입 예정(노사협의 중)<br>- 300인 미만 계열사(자산운용, 저축은행)는 2017년 도입 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현대     | - 현대엘리베이터, 현대경제연구원, 현대유엔아이 '16년부터 시행<br>- 기타 계열사는 도입 검토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OCI    | - OCI(주) 2010년 시행, OCI머티리얼즈(주) 2014년 시행, (주)씨알이 2010년 시행, OCI정보통신 2011년 시행, (주)OCI에스이 2014년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우건설   | - '15년 11월 말까지 도입하기로 노사합의 후 구체적인 사항 협의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자료: 전국경제인연합회, 「주요 그룹 임금피크제 도입현황」, 2015.10.